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조례로서 권리 관계가 법제상 이치에 맞지 않아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군수로 개정하고

○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사용허가, 입장의 제한 등에서 관장으로 되어 있는 운영주체를 군수로 함
(안 제4조, 제6조～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19조)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전시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2. 3. 28 ~ 4. 17)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조례로서 권리 관계가 법제상 이치에 맞지 않아 운영주체를 관장에서 군수로 개정하고

○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회관의위탁운영, 사용허가, 입장의 제한 등에서 관장으로 되어 있는 운영주체를 군수로 하고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전시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2. 개정이유

○ 우리 군에서 2010년도부터 직영해 오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행정법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제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내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실혼 관계 등 유사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대상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3호)

○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 “5년마다”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변경(안 제6조 제1항)

○ 제8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민간단체지원 등)”으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안 등을 신설
(안 제9조 제2항 내지 제7항)

○ 위원의 임기 등을 신설(안 제10조)

○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11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전문인력 배치, 예산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신설(안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영할 경우의 직제를 정함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및 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 예고 : 2012. 4. 2. ~ 4. 21까지

5. 검토의견

○ 우리군에서 2010년도부터 직영해 오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행정법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제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서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내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 사실혼 관계 등 유사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대상 근거마련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5년마다”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안 등을 신설하고

○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마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전문인력 배치, 예산지원, 다문화센터의 지정 등을 신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의 군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로서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합당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